

##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규정

- 제1조**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**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대학원장, 신학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이상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무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정한다.
- 제3조** 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4조** (심사대상) 위원회는 정년보장 요건을 갖춘 다음의 교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- ①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
- ② 부교수로서 교수 승진 임용예정자 중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한 교원
- 제5조** (심사자료)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- ① 연구실적 자료
- ② 교수업적평가자료
-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평정표
- ④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- 제6조** (심사영역 및 기준) 위원회는 심사대상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- ① 교수활동 능력
- ② 신앙활동, 인품 및 도덕성
- ③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복무자세
- ④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
- 제7조** (심사절차)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대상 교원에 대하여 별첨한 교수정년보장 심사평점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확인한다.
- ② 평정 점수 100점 중 7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.
- ③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제8조** (임용동의)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다.
- ② 심사결과 불합격한 교원은 차기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를 한다. 단, 임용기한이 정한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 기간을 인정한다.

제9조 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요구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규정개정) 본 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개정한다.

## 부 칙

1.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교원인사규정 개정(2012.8.31.) 이전 임용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승진한 교원과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년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심사를 실시한다.

【별지1】

## 정년보장교원 신청서

소속 :

직급 :

성명 :

위 본인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교원 심사를 신청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위원인 : \_\_\_\_\_(인)

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

【별표1】

정년보장교원 심사 평정표

피평정자	소속 : 직위 : 성명 :	확 인 자	위원장 : (인)	
구분 평정영역	평정항목		평가 상한점수	평가점수
평정사항	① 교수활동 능력		25	
	② 신앙활동, 인품 및 도덕성		25	
	③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복무자세		25	
	④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		25	
의견				
평정자	직명		성명	(인)